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9.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2호 중 “권익행정정보시스템·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을 “권익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제9조제3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3항제7호 중 “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공익신고자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채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공익신고자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부패행위등 신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를 “부패행위등 신고”로 한다.

제14조의2제7호 중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부패행위등 신고”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은”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2명”을 “43명”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한시정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84”를 “4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7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4”를 “45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0”을 “79”로 하고, 일반직 계 “80”을 “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7”을 “7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제1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권익행정정보시스템</u>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12. <u>권익행정정보시스템</u> ----- ----- ----- ----- --
13. ~ 22. (생략)	13. ~ 22.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감사담당관) ① (생략)	제7조의3(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u>
9. 삭제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9조(부패방지국) ①·② (생략)	제9조(부패방지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9조의2(심사보호국) ①·② (생략)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 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공익신고자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8. <u>부패행위 신고자, 부정청탁</u>	1. ~ 20. (현행과 같음) 21. <u>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u>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3. <u>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u> 제9조의2(심사보호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u>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 신고자-----</u> ----- 8. <u>부패행위등 신고자-----</u>
---	--

<u>신고자, 금품 등 수수 신고자, 공익신고자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u>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 ----- ----- ----- -----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11. <u>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u>의 접수 및 분류	11. <u>부패행위등 신고</u>----- ----- ----- ----- ----- -----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의2(직무)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부패 관련 각종 신고</u>에 대한 안내·상담	7. <u>부패행위등 신고</u>----- -----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
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
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③·④ 삭제

⑤ (생략)

<신설>

----- 정원(「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은 --. -----
-----.

② -----

--. -----

----- 43명 -----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한시정원) 공공기관의 채
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
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
위원회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4</u>	<u>480</u>	-4
•	•	•	
•	•	•	
일반직 계	<u>476</u>	<u>472</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4</u>	<u>450</u>	-4
•	•	•	
•	•	•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0</u>	<u>79</u>	-1
일반직 계	<u>80</u>	<u>7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7</u>	<u>76</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